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3. 7.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3.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9.17)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5.9.1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오경 의원)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 전통무예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가치 확산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용규)

1. 총괄 검토

○ 전통무예의 진흥을 목적으로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은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지도자 육성 및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함.

- 현행법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족무예캠프 추진, 글로벌무예포럼 개최,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 운영비 지원 등 전통무예 진흥 사업을 수행하여 왔음.

- 그런데 현행법에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 전통무예 실태조사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전통무예 실태조사, 기타 전통무예 지원 등의 법적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전부개정함으로써 전통무예 진흥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 8월 「제1차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5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전통무예 육성종목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¹⁾, 이를 전제로 한 전통무예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등도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이 실효적인 사업 진행의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인바,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참고로, 제21대 국회에도 전통무예 실태조사 도입 등을 위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2. 조문별 검토

1) [참고자료1] 전통무예 현황

가. 목적·정의(안 제1조, 제2조)

현 행 법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u>문화 국가 지향</u>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u>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u>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 는 다음과 같다. 1. “ <u>전통무예(「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u> ”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 체계로서 <u>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u> 을 말한다. 2. “ <u>전통무예지도자</u> ”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u>자</u> 를 말한다. 3.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뜻</u> 은 다음과 같다. 1. “ <u>전통무예</u> ”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 체계로서 <u>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u> 을 말한다. 2. “ <u>전통무예지도자</u> ”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u>사람</u> 을 말한다. 3. “ <u>전통무예육성종목</u> ”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무예 종목으로서 <u>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u>

	으로,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부 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	---

- 안 제1조(목적)는 현행법 조문에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 전달을 통해’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소멸 위험이 있는 전통무예 정신의 확산·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안 제2조(정의)는 ‘전통무예’(제1호)와 ‘전통무예육성종목’(제3호)을 구분하고, ‘전통무예’를 현행법상 ‘국가적으로 인정된 것’에서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재정의하며(제1호), ‘국가적으로 인정된 것’, 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은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새로 정의하려는 것임(제3호).
- 현행법에 따르면 ① ‘국가적으로 인정된 것(국가무형유산로 지정된 무예종목 포함)’이 아닌 문화는 ‘전통무예’에 포함되지 않는 등 ‘전통무예’의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바, ‘전통무예’를 문화 그 자체로 재정의하고, ② 현행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의미를 구체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참고로, 안 제2조제3호(‘전통무예육성종목’ 정의)와 관련하여, 현재 「무형유산법」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은 택견, 씨름, 활쏘기 등 세 종목임.

나. 실태조사·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등(안 제5조~제7조)

현행법	전부개정안
<신설>	제5조(전통무예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종목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지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이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하려면 사전에 관련 전통무예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에 대한 고시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 안 제5조(전통무예 실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 전통무예 실태조사는 2019. 4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전통무예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실시되지 않았고, 동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무예종목 및 단체는 생성과 소멸이 비공식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곤란하며 수시조사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바, 주기적인 전통무예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실태조사 관련 유사 입법례를 참고할 때, 실태조사 의무화 여부, 실태조사 세부사항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의 위임 등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및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는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및 취소·해제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현행법 제3조에 따라 2019년 8월 「2019~2024 제1차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고,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2025년 8월 현재까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지 못하였음.
- 현행법상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관련 사항은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에 보다 방점이 있고 기본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추진을 강제하는 측면은 약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관련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함으로써 동 사업의 추진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지정제도 관련 유사 입법례에서 ‘취소’는 주로 거짓·부정한 방법을 통한 지정, 법령 위반, 기준 미달 등의 경우에, ‘해제’는 주로 지정 목적 달성 불가, 여건 변화로 필요성 상실, 피지정자의 신청 등의 경우에 사용되는데, 개정안에서 의도하는 ‘취소’ 및 ‘해제’의 요건, 효력 발생 시기 등에 관한 논의를 통해 두 가지 모두 별도로 규정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유사 입법례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은 국가무형유산,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취소와 지정 해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다. 전통무예단체·국제무예센터·전통무예지도자(안 제8조~제10조)

현 행 법	전부개정안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현행과 같음)
제6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제10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현행과 같음)

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안 제8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안 제9조(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및 안 제10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는 현행법과 동일하며,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단체·지도자 육성, 전통무예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 대한 지원 등의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므로, 현행 조문의 유지는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자격 검정제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현행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전통무예단체 육성 사업과 전통무예지도자 육성 사업은 현재까지 추진된 바 없으며,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지원 사업은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운영비 지원, 전통무예 진흥, 국제무예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매년 추진되고 있음.

라. 전통무예 교육 지원·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안 제11조, 제12조)

현 행 법	전부개정안
<신 설>	제11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발전하기 위하여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국제대회의 개최,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안 제11조(전통무예 교육 지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전통무예를 문화 원형의 연구·보존에 그치지 않고 표준화된 교육체계 마련, 전문인력 양성과 보수교육 추진, 생활체육·마음가짐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의 접목 등을 통해 전통무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참고로, 현재까지 전통무예 교육 지원 사업이 추진된 바 없음.

○ 안 제12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대행 및 경비 보조를 통해 국내·국제대회의 개최,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체계화된 것도 전통무예에 해당하는 등 전통무예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전통무예 문화 홍보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내·국제대회의 개최 지원 사업은 예산 지원 없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장 지원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제교류 지원 사업은 국제연무대회, 글로벌 무예 포럼, 세계 무예 심화 조사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

마. 권한 위임·위탁(안 제13조)

현 행 법	전부개정안
제7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 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안 제1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행정효율성·전문성 및 수혜자의 편의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안 제13조제1항의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장’의 경우 현재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가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는 것(「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으로 각각 해석할 필요가 있겠음.

바. 부칙(안 부칙)

전부개정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 부칙은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을 규정한 것으로, 전통무예 실태조사 실시,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전통무예 교육·대회·국제교류 지원 등은 모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년부터 「제1차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예정이었던 사업들이나, 6개월은 충분하고 적절한 기간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정하)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해제는 공익을 이유로 자격을 상실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격 검정제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았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

1.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해제는 공익을 이유로 자격을 상실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격 검정제도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동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안 제7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수정주요내용

가.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해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2항).

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던 전통무예지도자 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안 제10조, 제11조).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취소 및”을 “취소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1. 종목 및 단체의 소멸
2. 종목 특성의 상실
3.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

안 제10조제2항 중 “, 연수, 검정 및”을 “및”으로 한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① (생 략)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 무예육성종목이 <u>국가적 차원에</u> <u>서 진흥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u> <u>아졌을</u>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지정의 <u>취소</u> 및 제2 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하려 면 사전에 관련 전통무예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④ (생 략)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에 대한 고시에 관하여는 제6 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① (원안과 같음) ② ----- ----- <u>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u>1. 종목 및 단체의 소멸</u> <u>2. 종목 특성의 상실</u> <u>3.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u> <u>이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u> ③ ----- ----- <u>취소 또는</u> ----- ----- ----- ----- -----. ④ (원안과 같음) ⑤ ----- <u>또는</u> ----- ----- -----.
제10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생 략)	제10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원안과 같음)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1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생

② -----
-----및-----

-----.

제11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개

략) <u>제12조</u>(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①·② (생략) <u>제13조</u>(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② (생략)	정안과 같음) <u>제13조</u>(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①·② (개정안과 같음) <u>제14조</u>(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	--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통무예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육성종목”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무예 종목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으로,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전통무예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
· 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
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무예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8조에 따른 전
통무예단체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종목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스포츠적 가치가 있
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
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지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종목 및 단체의 소멸
2. 종목 특성의 상실
3.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련 전통무예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시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

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계승·발전하기 위하여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국제대회의 개최,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중 “제5조”를 “제8조”로 한다.